

#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화금융통계가 새로운 국제통계기준(2008 SNA)에 부합하면서 금융환경 및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개정된 「통화금융통계 매뉴얼(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and Compilation Guide)」 Prepublication Draft를 발간하였으며 2018년중 최종본을 배포할 예정이다.

IMF의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은 종전에 발표된 매뉴얼(MFSM 2000)과 통화금융통계 편제가이드(MFSCG 2008)를 통합하고, 주요 국제통계기준인 「2008 국민계정체계(SNA)」, 「국제수지매뉴얼(BPM6)」의 개념 및 통계작성방법 등이 일관되도록 작성되었다. 아울러 새로운 금융상품 등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개정 매뉴얼에서는 통화지표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포괄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s) 및 금융상품 분류를 2008 SNA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한국은행은 IMF의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우리나라 통화금융통계 개편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I. IMF의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 개요

1. 통화금융통계의 범위
2. 기본원리 및 개념

## II. 주요 개정 내용

1. 제도부문별 구분 관련 변경
2. 금융상품 분류 관련 변경
3. 기타 변경사항

## III. 통화금융통계 개편 추진 방향

# I. IMF의 통화 금융통계 개정 매뉴얼 개요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and Compilation Guide, 이하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 발간의 주요 목적은 통화금융통계 편제담당자와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통화통계 편제 및 이용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통화금융통계의 구조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데이터와의 관계 등도 포괄하고 있어 다른 거시경제통계의 편제담당자 및 이용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통화금융통계와 관련한 국제기준은 1990년대 중반 IMF 주도하에 제정작업이 추진되었으며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0년 10월 「통화금융통계 매뉴얼」로 확정, 발간되었다. 동 매뉴얼에서는 1993 SNA의 개념과 체계를 통화금융통계에 도입함으로써 국민소득, 자금순환, 국제수지 등 국민계정과 일관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국민계정 관련 국제기준이 새로이 개편되어 「2008 국민계정체계(이하 2008 SNA)」, 「국제수지 매뉴얼(BPM6)」 등이 작성·발표됨에 따라 통화금융통계도 2008 SNA 등의 개념, 정의 및 권장사항 등을 통합하고 더욱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Prepublication Draft)이 작성(2016)되었다.

IMF의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은 총 8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통화금융통계 개념의 이해와 편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통화통계와 다른 거시경제통계와의 관계, 표준화된 보고양식 등)도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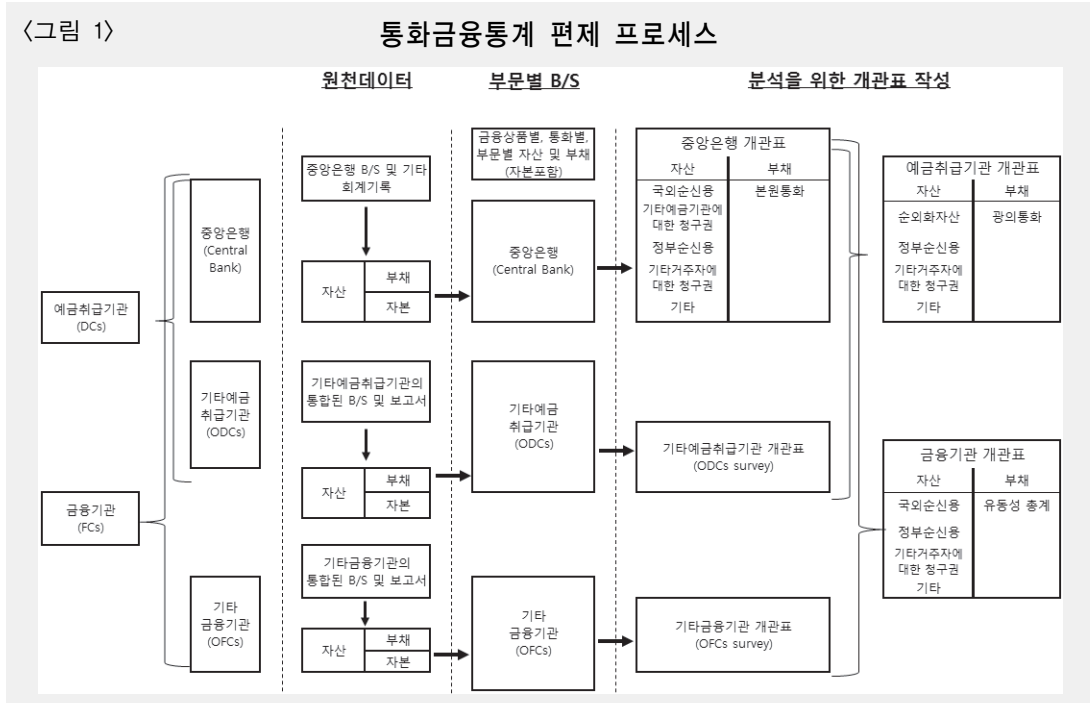
〈표 1〉

##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의 구성

- 1장 개요
- 2장 통화금융통계 개념구조에 대한 개관
- 3장 제도단위 및 부문
- 4장 금융자산 및 부채의 분류
- 5장 스톡, 플로우 및 회계기준
- 6장 통화, 유동성, 신용 및 부채
- 7장 통화통계의 원천자료 및 편제·공표
- 8장 금융통계

## 1. 통화금융통계의 범위

통화금융통계는 주로 금융기관 부문에 초점을 두어 한 경제내의 모든 금융 및 비금융 자산 및 부채를 포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다. 통화금융통계에는 광의통화, 신용, 국외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 대한 금융자산 및 부채의 스톡과 플로우 지표가 포함된다. 통화금융통계의 편제는 원천데이터인 개별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중앙은행, 기타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등 금융기관 부문별로 재배열하여 중앙은행 개관표,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및 금융기관 개관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관표에서 자산은 경제부문별로 금융부문 이외 타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청구권으로, 부채는 금융상품을 유동성에 따라 범주화하여 나타낸다.



통화금융통계를 통화통계, 금융통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통화통계는 통화량과 유동성을 주로 지칭하는 것으로 예금, 금융상품 등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국민계정, 국외 부문 통계, 정부재정통계 등 다른 거시경제통계에 비해 신속하게 편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월단위로 작성, 정책 활용 및 금융시장 주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금융통계는 통화통계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경제주체들의 스톡과 플로우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주체와 국외부문간 스톡과 플로우까지 포괄한다. 금융통계는 원천데이터의 가용성 등에 따라서 공표 범위의 수준이 결정된다. 금융통계는 금융계정과 2008 SNA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편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화금융통계와 국민계정통계 담당자간 협력을 통해 자금순환표 작성이 용이해지는 등 거시통계의 통합적 활용을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 2. 기본원리 및 개념

통화금융통계를 비롯한 거시경제통계의 개념 및 편제 실무와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것은 2008 SNA이다. 따라서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의 기본 원칙 및 개념은 2008 SNA, 국제수지매뉴얼 등 주요 국제통계기준과 일치한다. 특히 거래의 인식, 주체별 분류, 금융자산·금융부채별 분류, 금융·비금융자산에 대한 기록 및 평가 등에서 개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거시경제통계간 조화와 비교가능성을 높여주어 통계편제자, 통계이용자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sup>1)</sup>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의 기본 개념 및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경제 영역, 거주성, 경제적 이익중심점

통화금융통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분류는 2008 SNA 및 국제수지 매뉴얼과 동일하다. 한 제도부문이 한 국가의 경제 영역내의 어떤 지역(거주지, 생산지, 또는 기타 부동산)에서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에 종사(적어도 1년 이상)하고, 계속 종사할 의지가 있는 경우 그 국가에 경제적 이익중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국가의 거주자라고 할 수 있다.

### 나. 제도부문, 금융자산·부채의 분류

2008 SNA와 동일하게 제도부문의 구분은 ①비금융법인, ②금융기관, ③일반정부, ④가계

1) 다만, 2008 SNA는 그 포괄범위가 넓기 때문에 통화금융통계 편제에 불필요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으며, 통화금융통계도 2008 SNA에는 나타나지 않는 회계규정 및 규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 다소간의 불일치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손실충당금의 적립, 지분부채(Equity Liability)의 평가, 금융부문의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및 비영리단체로 구분한다. 금융자산·부채 분류도 2008 SNA와 동일하다. 다만,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2)</sup>

## 다. 가격평가 원칙

통화금융통계상 금융자산·부채의 평가는 2008년 SNA와 일관되게 시장가치를 기초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거래가 없거나 거래 빈도가 낮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시장가치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가치 추정 방식 등을 이용한다.

〈표 2〉 통화금융통계의 금융자산 및 부채의 분류 및 평가방법

분류	평가 방법
화폐용 금(중앙은행)	시장가치
SDR(중앙은행)	시장가치
통화	액면금액(해당국 화폐 단위)
예금	명목가치(해당국 화폐 단위)
채무증권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대출	명목가치(해당국 화폐 단위)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자산 혹은 투자펀드지분인 경우), 장부 가액(부채인 경우)
보험, 연금 및 표준보증기구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금융파생상품, 종업원 스톡옵션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기타 미수금/미지급금 등	명목가치

## 라. 거래의 인식 시점

2008 SNA와 일관되도록 통화통계에서도 거래의 인식시점은 결제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창출,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이며 원칙적으로 두 거래 당사자가 동시에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경제적 거래의 계상 시점인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을 따른다.

2) 예를 들어 예금 및 채무증권을 광의통화 포함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자본도 지분구조 분석 등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①납입자본, ②이익잉여금, ③당기순이익, ④이익준비금, ⑤평가조정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 마. 집계(Aggregation), 통합(Consoildation), 상계(Netting)

집계란 스톡 및 플로우 데이터를 부문별 또는 하위부문별로 합산하거나 특정항목에 대해 모든 자산 또는 부채를 합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통합은 동일 그룹 내의 제도적 단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스톡과 플로우)를 제거하여 하나의 경제 단위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총액기준으로 편제되고 기록되어야 하나 어떤 경우에는 순액기록에 따른 자료의 편제가 적절하거나, 총액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자료의 상계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 II. 주요 개정 내용

### 1. 제도부문별 구분 관련 변경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s)은 2008 SNA에 맞추어 금융부문이 기존 5개의 하위부문에서 9개로 확대 분류되었다. 먼저, 기타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금융지주회사, 대부업체 등 일부 금융기관을 별도의 하위부문인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타 예금취급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수익증권(non-MMF)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타금융기관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을 보험회사, 연금기금으로 분리하였다.(“<참고> 매뉴얼 개정 전·후 제도부문 분류 비교” 참조).

또한 일반정부의 경우 하위부문의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안전기금(social security funds)을 기금별 성격에 따라 각 정부부문으로 통합 분류하였다.<sup>3)</sup>

### 2. 금융상품 분류 관련 변경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펀드가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로 분류변경되었다. 기존 매뉴얼상 보험계약준비금은 ‘보험, 연금 및 표준보증기구’로 변경되었고 자산의 범위에 표준보증기구 및 연금 청구권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또한 종업원 스톡옵션을 파생 금융상품에 추가하였다.

3) 기존 매뉴얼에서는 ①중앙정부, ②주정부, ③지방정부, ④사회보장기금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정된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은 사회보장기금을 각각 기금운영 주체인 정부부문(중앙, 주 또는 지방정부)에 통합하여 일반정부의 일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 3〉

주요 금융자산의 분류

1993 SNA	2008 SNA
화폐용 금 및 SDR	화폐용 금 및 SDR
현금통화 및 예금	현금통화 및 예금
주식을 제외한 증권	채무증권
대출채권	대출채권
주식 및 기타 지분증권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보험계약준비금	보험, 연금 및 표준보증기구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 종업원 스톡옵션
기타 미수금	기타 미수금

통화금융통계와 관련하여서는 수익증권(non-MMF)을 발행하는 투자펀드가 예금취급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광의통화 범주에서 수익증권이 제외되었다. 이는 MMF를 제외한 수익증권의 자산가치가 시장상황에 따라 비교적 크게 변동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수단 및 안정적인 가치저장수단이라는 통화의 성격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IMF의 회원국에 대한 특별인출권인 SDR이 기존에는 자본의 일부로 통화통계에 기록되었으나 개정 매뉴얼에서는 특정 상황 발생 시 배당금 상환 요구가능성 및 이자 발생의 이유로 SDR을 장기외채로 간주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부채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상품의 국내통화 또는 국외통화 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전에는 결제통화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나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가 국외통화의 가치에 연동되어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국외통화로 표시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내통화로 표시되던 IMF 계정 등을 외화통화로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기타 변경사항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은 광의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특징(교환의 매개수단 및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과 통화통계 정의를 위하여 통화발행주체(광의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모든 금융기관, 통화보유주체(기타금융기관, 지방정부, 비금융기업, 가계 및 비영리단체 등) 및 통화중립주체(중앙정부 및 비거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신용과 유동성 통계에 대해서도 더 정교한 논의를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sup>4)</sup>

4)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발행주체로서 기타금융기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유동성지표를 유동성발행주체와 포괄 금융상품의 범주를 달리하여 L1, L2, L3, L4로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화통계 수집과 관련한 방법론적 변화를 통화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통화금융통계 표준양식에 포함될 내용의 상세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양식 개정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중앙은행 부문별 대차대조표의 부채 측면에 SDR 식별, 각국 중앙은행의 IMF 계정 등을 국내통화 표시에서 외화표시로 변경, 부문별 대차대조표의 자산 측면에서 MMF 및 수익증권(MMF 제외) 식별, 부문별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문에서 MMF(기타예금취급기관)와 수익증권(기타금융기관) 식별 및 보유자 구분, 자산 및 부채 식별과 관련한 상세한 주석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정부기관이 명시적으로 특정 기업활동에 통화를 제공하기 위해 기타금융기관에 예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예금이 아닌 신용공급으로 간주된다.

### Ⅲ. 통화금융통계 개편 추진 방향

한국은행은 IMF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우리나라 통화금융통계 개편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 내용 반영을 위해 통화금융통계조사표, 통화금융통계의 집계 방식 변경 등 전반적인 통계작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동 작업의 수행을 위해 경제통계국은 금융상품, 금융기관 및 제도 등 금융부문 변화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 수렴, 조사표 작성대상 금융기관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통화금융통계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IMF의 2000년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화금융통계 개편 작업은 2000년 6월 통화금융통계 개편 세부 추진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2003년 9월 시계열 소급편제 결과 공표까지 약 3년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고〉

매뉴얼 개정 전·후 제도부문 분류 비교

	기존 매뉴얼	개정 매뉴얼
금융기관	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	중앙은행
	기타예금취급기관	기타예금취급기관
		기타예금취급기관(MMF제외)
		MMF <sup>1)</sup>
	기타금융기관	기타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보험회사
		연금기금
	금융보조기관	금융보조기관
	수익증권(Non-MMF 투자펀드) <sup>1)</sup>	
	전속금융기관(Captive financial institutions: 금융지주회사 등) 및 대부업체 <sup>2)</sup>	
	기타금융중개기관	
일반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주(state) 정부	주(state) 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사회안전기금 <sup>3)</sup>	
비금융법인	공공 비금융법인	공공 비금융법인
	기타 비금융법인	기타 비금융법인
가계	-	-
가계봉사형 비영리단체	-	-

주: 1) 기존 매뉴얼에서 분류가 불명확했던 MMF 및 수익증권(Non-MMF 투자펀드)이 각각 별도의 하위부문으로 구분

2) 기존 기타금융중개기관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문이 별도 구분

3)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각 기금의 성격에 따라 정부부문으로 통합 분류